국토교통부

국 토 교 통 부

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

수신 (주)이오앤대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귀하
(경유)
제목 ㈜이오앤대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알림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귀 사가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라 우리 부에 제출한 ㈜이오앤대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특례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례등록합니다.

가. 상호 : ㈜이오앤대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나. 본점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, 20층(서초동, 교보생명보험(주) 서초사옥)

다. 설립자본금 : 3억원

라. 사업내용 : 경기도 과천시 「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」 내 대토보상권자(강두석 외 29인)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업무시설용지 내 데이터센터를 개발하여 매각하는 사업

마. 등록조건

○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, 주요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을 받은 이후 추진할 것

○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산관리 확인서 및 준법서약서 등에 따라 토지보상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대토보상권(대토리츠 주식 포함)의 전매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할 것

○ 사업계획에 따른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된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할 것

○ 특례등록 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저자본금 준비기간 내에 현물출자 및 주식배정을 완료하고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할 것

○ 특례등록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대토보상권자가 당해 대토리츠에 추가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배정받거나,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대토보상권자가 현물출자를 포기(철회)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의 변경등록을 받을 것

○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법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내용과 함께 동법 제37조제4항의 방법으로 공시할 것

○ 대토보상권이 원 대토계약자로 회복 및 현물출자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할 것

○ 대토공급 대상필지의 변경, 취소(해산), 공급불가 사유 발생,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시 지체없이 그 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변경등록을 받을 것

○ 영업인가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제4항, 제5항, 제6항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할 것

○ 특례등록 이후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여건 변화 등 사업 추진현황을 매월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영업인가 전 리스크 대응계획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주무관 고은비 시설사무관 강윤빈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계홍 전결 2026. 6. 22.

협조자

시행 부동산투자제도과-1757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(어진동) / http://www.molit.go.kr

전화번호 044-201-3419 팩스번호 044-201-5538 / eunbigogo@molit.go.kr / 비공개(5)